

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
예방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권영식 의원 발의】



2019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

## 예방에 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28호로 2019년 6월 5일 권영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교통안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 - 안 제4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 
따라서,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,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# 도로교통법

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(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(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(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14호,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,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19. (생략)

20.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(失效)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. 다만,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

## 2

### 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